



즉시 배포용: 2017년 1월 9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2017년 시정 어젠다의 12번째 제안 발표: 사회적 정의를 증진하고 뉴욕의 진보적 가치를 확인하기 위한 “NEW YORK PROMISE” 어젠다 개시
뉴욕의 시대에 뒤떨어진 보석 제도를 점검하고, 신속한 재판 기회를 보장하며,
형사책임 연령을 상향하고, 증인에 의한 확인 절차를 개선함

주지사가 임금 격차를 없애기 위한 2개의 행정 명령에 서명함

뉴욕에 있는 이민자들의 기회를 확대하고, 능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We Are All Immigrants” 이니셔티브 개시

공동대책팀과 함께 증오 범죄와 싸우고, Dolan 추기경이 이끄는 새로운 범종교
자문위원회 (Interfaith Advisory Council)와 함께 관용을 장려함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사회적 정의의 원칙을 진전시키고, 뉴욕의 진보적 가치를 확인하기 위한 전면적이고 전례 없는 패키지이자, 모든 형태의 차별에 대항해서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국가적 기준인 “New York Promise” 어젠다를 제안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안정과 혼돈이 난무하는 이 격렬한 시기에, 뉴욕은 반드시 미국을 만들었던 진보적 원칙들과 사회적 정의를 위한 안전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회를 향한 길에 빛을 밝히기 위해서 선봉에 설 것이며, 이는 그것이 뉴욕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은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하는 것이며, 우리는 우리가 이루어온 사회적 진보를 더욱 진전시키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그 싸움을 지속할 것입니다.”

“New York Promise” 어젠다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사법제도 개혁: 주지사는 체포에서 재판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민들에 대해서 평등한 정의를 보장하게 될 일련의 포괄적인 개혁을 제안합니다. 주지사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조치를 추진할 것입니다.

- 뉴욕의 시대에 뒤떨어진 보석 제도 점검

- 신속한 재판 기회 보장
- 형사책임 연령 상향
- 증인에 의한 확인 절차 개선
- 중대 범죄에 대한 경찰 심문 녹화
- 주 전역에서 Hurrell-Harring 합의사건의 개혁조치 확대

임금 격차 제거: Cuomo 주지사는 뉴욕에서 임금 격차를 조속히 제거하기 위한 2 개의 행정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동시에 시행되는 이 행정 명령들은 모든 주 정부기관들이 채용 후보자의 종전 임금에 기초해서 후보자를 평가하거나, 채용 예정 직원에게 종전의 임금 이력을 질문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뉴욕에서 평등한 임금을 위한 보호조치를 강화할 것입니다. 아울러, 뉴욕은 주 정부와 계약하는 업체들에 대해 피용자의 성별, 인종 및 민족에 관한 데이터를 공개하도록 요구할 것이며, 세금을 활용해서 주 전역에 걸쳐 투명성을 증진하고, 임금 평등을 진전시킬 것입니다.

이민자에 대한 기회 확대: “We Are All Immigrants” 이니셔티브가 뉴욕에 있는 이민자 가정과 지역사회의 성공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이 이니셔티브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엠파이어 스테이트 이민자 법률지원 프로젝트 (Empire State Immigrant Defense Project) 시행.
- 주 정부의 이주자 지원국(Office for New Americans, ONA)에서 제공되는 귀화 서비스 확대.
- DREAM Act (Development, Relief, and Education for Alien Minors Act) 통과를 위한 압박 조치.
- 이민자와 그 가족의 사회 통합과 성공을 지원하는 권고사항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민자에 관한 뉴욕주 블루 리본 패널(New York State Blue Ribbon Panel on Immigrants) 소집.

중요 범죄와의 전쟁 및 관용 장려: 주지사는 편견과 차별에 따른 사건을 조사하고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주 차원의 중요범죄대책팀을 출범시킬 것입니다. 이 대책팀에는 뉴욕주 경찰과 뉴욕주 인권국 담당자들이 포함되며, 이들은 중요 범죄를 조사하고, 뉴욕 주민들에게 그들의 권리를 교육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활동을 수행할 것입니다. 아울러, 주지사는 모든 종교와 문화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고 관용하도록 돕고, 열린 마음과 포용성을 증진하며, 모든 뉴욕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주 정부의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Dolan 추기경이 이끄는 새로운 범종교 자문위원회(Interfaith Advisory Council) 구성을 발표했습니다.

New York Promise 어젠다에는 선거 연령 하향, 자동 투표자 등록 및 선거일 당일의 투표자 등록을 포함해서, 뉴욕의 투표 시스템을 현대화하기 위해서 [일요일](#)에 발표된 일련의 조치들도 포함됩니다.

형사사법제도 개혁

보석 및 재판 전 구금 개혁

뉴욕은 현재 피의자가 석방되는 경우 공중에 위협이 되는지 여부를 재판 전에 판사가 심사할 수 없도록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국내의 단 4 개 주 중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는 피의자가 재판 전에 석방되는 경우 사회에 실제로 위협을 야기하는지 여부를 고려하는 대신, 사실상 자유를 재무 상태와 동일시합니다.

이러한 두 단계의 제도는 금전적으로 불리한 사람들이 수 개월 동안, 심지어는 수 년 동안 구금되게 만들 수 있으며, 이는 그들이 많지 않은 금액의 보석금조차 납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뉴욕시의 경우, 2015 년에 중범죄에 대한 평균 보석금이 5,000 달러였고, 경범죄에 대해서는 1,000 달러였습니다. 개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이 금액은 부담하기 용이할 수도 있고(석방으로 귀결됨),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구금이 지속됨). 이는 불공정하고 부정당합니다.

이 부당한 제도를 시정하기 위해서, **Cuomo** 주지사는 판사가 모든 재판 전 석방 결정의 일환으로서 검증된 위험 평가를 이용할 수 있게 허용하기 위한 일련의 종합적 개혁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 판사는 석방된 경우에 개인이 공중에 미치게 될 위험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를 이용할 것입니다. 이는 위험이 낮은 개인이 재판 전에 석방될 수 있고, 위험이 높은 개인은 구금이 유지되도록 보장할 것이며, 소득이 낮은 뉴욕 주민들이 형사사법제도 내에서 불균형적으로 징벌되지 않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이러한 평가는 석방 결정에 있어서 어떠한 편견도 없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검증되고, 객관적이며, 투명한 기관들에 의해서 수행될 것입니다. 아울러, 이는 고위험 피의자가 구금되어 유지되도록 보장함으로써 공공 안전을 강화할 것입니다.

주지사는 저위험 피의자에 대한 재판 전 구금의 대안을 제공하고,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현금 보석의 이용 상황을 조사하기 위한 작업도 진행할 것입니다. 판사는 피의자가 재판 전에 구금 상태를 유지하거나 석방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두 개 이상의 선택방안을 가져야 합니다. 보고 또는 감시 등과 같은 조건을 판사가 정할 수 있게 해주면 불필요하게 구금되는 사람의 수를 줄이는 한편으로 공공 안전도 보존하게 됩니다.

신속한 재판 기회 보장

미국의 제 6 차 개정 헌법과 주 법률에서는 범죄로 기소된 모든 시민들이 신속한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보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너무도 종종, 피의자들이 과도한 기간 동안 재판 전에 구금되고 있으며, 법원은 진행 중인 형사 재판 건수가 너무 많아서 부담이 큰 상태입니다. 이는 형사사법제도에 지장을 주고, 저소득 소수자 계층에 불평등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 지연으로 귀결됩니다.

형사사법제도의 온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뉴욕은 형사사건이 부당한 지연 없이 재판으로 진행되고, 사람들이 비합리적인 기간 동안 구금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새로운 개혁 조치를 시행할 것입니다.

주지사는 법원 절차의 불필요한 지연과 연기를 줄이게 될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안된 법률에서는 구금된 사람의 변호사뿐만 아니라, 본인도 신속한 재판의 포기에도 동의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할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판사에 의한 승인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포기는 구금된 피고인이 판사 앞 출두한 후에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신속한 재판에 대한 모든 포기에는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사, 검사, 그리고 판사가 재판 일정을 이해하고, 사건의 지연이 법원의 일정을 방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마감시한을 포함시킬 것이 요구될 것입니다.

주지사는 신속한 재판에 대한 헌법적 권리가 뉴욕주 전역에 걸쳐 실현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행정적 접근방식을 마련하고, 아울러 추가적인 입법적 조치를 권고하기 위해서 Janet DiFiore 법원장과의 협력할 것입니다. 그 목표는 불필요한 혼선을 제거하고, 사법절차의 공정성을 증대하며, 모든 뉴욕 주민의 신속한 재판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지침을 개발하고, 입법적 조치를 제안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형사책임 연령 상향

뉴욕은 범죄를 불문하고, 모든 16 세 및 17 세 범죄자를 성인 형사사법제도에서 처리하는 국내의 단 2 개뿐인 주 중 하나입니다. 2015 년에 27,000 명의 청소년들이 체포된 뉴욕에서는 현재 이러한 청소년들 중 대략 86%가 비폭력성 범죄로 체포되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은 성인 형사사법제도에서 처리되며, 여기에서 그들은 잠재적으로 지역의 카운티 교도소나 주립 교도소에 수감될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성인 형사사법제도는 청소년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뉴욕주의 경우, 지역의 교도소와 주립 교도소에 대략 500 명의 18 세 미만자가 존재합니다. 연령에 적합한 시설과 프로그램이 없다면, 이러한 청소년들은 중대한 공격에 관여되고, 성폭력의 피해자가 되며, 자살을 하게되는 보다 큰 위험에 직면합니다.

지난 3 년에 걸쳐, Cuomo 주지사는 이와 같이 정의롭지 못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극적인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2014 년에 Cuomo 주지사는 뉴욕의 형사사법제도 및 청소년사법제도를 현대화하고, 청소년들이 생산적이고 성공적인 성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와 갱생을 받도록 보장하기 위한 권고사항을 제공하기 위해서 *청소년, 공공안전 및 사법정의 위원회(Commission on Youth, Public Safety, and Justice)* 설립을 발표했습니다. 2015 년에 Cuomo 주지사는 이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여, 주 의회가 심각한 폭력 범죄에 관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6 세 및 17 세 범죄자들을 모든 범죄에 대해서 청소년으로 취급하고, 모든 미성년자들에 대해 갱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Raise the Age** 법률을 통과시키도록 요청하는 옹호자들에 동참했습니다. 그 해 후반에 이 법률안이 입법화되지 못한 후, 주지사는 교정감독부가 아동가족사무국과 협력해서, 성인 교도소에 있는 미성년자들을 연령에 적합한 새로운 시설로 이감하기 위한 계획을 시행하도록 지시하는 행정 명령 제 150 호를 발령했습니다.

올해, Cuomo 주지사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Raise the Age** 법률안에 대한 그의 요청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주지사는 심각성이 덜한 범죄를 범하는 16 세 및 17 세 청소년들이

필요한 개입 조치와 증거 기반의 처우를 받도록 보장하기 위한 법률안을 소개할 것입니다. 심각한 범죄를 범하는 청소년들은 여전히 책임을 지게 될 것이지만, 특별히 교육을 받은 판사들로부터 그 사건을 심리받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청소년들은 재범률을 감소시키고, 청소년 범죄율을 낮추며, 모든 뉴욕 주민들을 위해서 상당한 공공 안전 혜택을 제공하게 될 특수 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것입니다.

증인에 의한 확인 절차 개선

잘못된 증인의 확인이 잘못된 유죄판결의 주요 요인으로 확인되어왔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적절히 수행되는 경우에 증인의 확인 절차는 범죄 또는 목격 시점에, 그리고 범죄 혐의자가 확인될 수 있는 최초의 절차에 가장 근접하게 수행될 때 가장 신뢰할 수 있습니다. 종종 이러한 확인은 범죄 혐의자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부인하기 위해서 범죄 피해자나 증인에게 여러 장의 사진을 보여주는 사진 열람 방식을 이용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는 실제로 어떤 사람이 범죄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매우 효과적일 수 있으며, 무고한 사람이 체포되어 유죄판결을 받는 것을 방지하고, 범죄자에게 책임을 묻는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뉴욕은 배심원이 사진 열람 방식을 이용하는 증인이 한 혐의자 확인의 증거를 심리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는 국내 유일의 주입니다.

이제 뉴욕주가 형사사법제도에서 이러한 결점을 시정해야 할 시점입니다. 증인이 하는 확인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합니다. Cuomo 주지사는 확인 절차가 “블라인드(blind)” 및 “블라인디드(blinded)” 관리 방식 등의 적절한 안전장치를 이용해서 수행된 심리에서 증인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진 확인 방식을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경은 배심원들이 그들의 결정에 대한 기초가 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증거를 갖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Innocence Project, 뉴욕주 지방검사협회 및 뉴욕주 변호사협회의 합의에 기초한 이 개혁은 범인 확인 절차의 완전성을 향상시키는 물론이고, 잘못된 유죄판결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범인이 책임을 지게 만듦으로써 공공 안전을 강화할 것입니다.

중대 범죄에 대한 경찰 심문 녹화

현재 뉴욕은 범죄 혐의자의 심문이 법 집행기관에 의해서 녹화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문은 종종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증거를 제공하고, 무고한 피의자의 무죄를 밝혀주므로, 형사사건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허위 자백에 기초해서 잘못 유죄판결을 받는 사건도 있고, 경찰관이 강압을 이유로 잘못 기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범죄 수사를 위한 경찰 심문의 동영상 녹화는 허위 자백이나 법 집행기관의 강압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고도의 효과적 수단이라는 점이 형사사법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광범위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범죄 혐의자의 심문을 통해 입수된 정보의 온전성과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Cuomo 주지사는 법 집행기관이 살인, 납치 및 성범죄를 포함해서, 중대 범죄에 대해 감금 상태의 혐의자에 대한 심문을 동영상으로 녹화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사법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람들의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제안된 법률은 뉴욕주 지방검사협회, **Innocence Project** 및 뉴욕주 변호사협회의 합의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2013년 이래, 주 정부는 동영상 녹화 장비를 구매 및 설치하고,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녹화하기 위해 이용 가능한 심문실 수를 늘리며, 기존 장비에 대해서 데이터 저장 용량을 추가하기 위해서 경찰서, 보안관실 및 지방검사실에 300만 달러 이상의 자금과 아울러 맨해튼 지방검사 **Cyrus R. Vance Jr.**의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서 이러한 공감적 조치를 지원해왔습니다.

무자력 피의자를 위한 **Hurrell-Harring** 합의사건 개혁조치를 주 전역으로 확대

연방대법원이 **Gideon v. Wainwright** 사건과 그 후속 판례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이 없는 개인에게 정부가 고품질의 형사 방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최고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지정한 변호사로부터 광범위하게 격차가 나는 수준의 변호를 받는 피고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도 자주 들리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이 없는 피고인들에게 제공되는 변호의 질이 카운티마다 달라서는 안 됩니다. 주 정부는 이와 같이 극히 중요한 서비스가 주 전역에 걸쳐 통일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일관되게 제공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2014년에 주 정부는 5개 카운티에서 필요한 수준의 무자력 피고인 변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기초해서 주 정부와 해당 카운티들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인 **Hurrell-Harring et al. v. State of New York et al.** 사건에서, 실패하고 있던 공익적 피고인 변호 제도를 진정으로 개혁하기 위해서 해당 사건을 성공적으로 협상해서 합의했습니다. 무자력 피고인에 대한 변호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이와 같이 중요한 진전이 우리 주의 모든 카운티에서 제공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모든 피고인들에 대한 공정하고 평등한 변호를 보장하기 위해서, **Cuomo** 주지사는 예산국을 통한 적절한 재정적 감독과 함께, **Hurrell-Harring** 합의에 규정된 개혁조치를 우리 주의 모든 카운티와 뉴욕시로 확대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의 100%를 주 정부가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도입할 것입니다.

입금 격차 제거

가장 최근의 데이터에 기초할 때, 뉴욕의 여성은 남성이 1달러를 벌 때 87센트를 벌고 있습니다. 유색 인종 여성은 백인 남성과 비교할 때, 훨씬 더 열악합니다. 남성의 1달러 대비, 아프리카계 미국 여성은 평균 69센트를 벌고, 라틴계 여성은 58센트를 벌고 있습니다.

미국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에 미국에는 1,200만 가구의 한 부모 가정이 있었으며, 그 중 80% 이상이 싱글맘 가정이었습니다. 뉴욕의 경우, 주 전역의 아동 중 3분의 1 이상이 한 부모 가정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더욱이, 맥킨지 (McKinsey)보고서에서는 전체 노동력 패리티(full labor force parity)가 2025년까지는 미국 GDP (Gross Domestic Product)에 대해 추가로 4.3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주 정부는 모범을 보이면서 선도해야 하며, 모든 뉴욕 주민들에 대해 평등한 임금을 보장해야 합니다. 주 전역의 임금 평등을 강화하기 위해서, **Cuomo** 주지사는 다음 행정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행정 명령 제 161 호

행정 명령 제 161 호에서는 주 정부기관이 예비 채용자의 종전 임금 이력을 묻는 것을 금지합니다. 기업들은 후보자의 종전 임금 이력에 기초해서 임금을 제안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러한 조치는 개인들, 주로 여성과 소수자들이 그들의 전체 직업 경력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불공정한 보수의 순환을 깰 것입니다.

주 정부기관의 채용 후보자는 자신이 보수가 포함된 조건부 채용 제안을 받을 때까지 자신의 현재 보수나 종전의 보수 이력을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조건부 제안이 제시된 다음에는, 주 정부기관이 보수 정보를 요청하고 검증할 수도 있습니다. 주 정부기관이 이미 지원자의 종전 보수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경우, 법률이나 단체협약에 의해 요구되지 않는 한, 채용 예정자의 급여를 결정함에 있어서 해당 정보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주지사의 노동관계국(**Governor's Office of Employee Relations**)이 이러한 절차를 모니터링하고 감독할 것이며, 새로운 법령의 요건에 대해 주 정부기관의 소관 인사 담당자들을 교육할 것입니다.

행정 명령 제 162 호

행정 명령 제 162 호에서는 모든 주 정부 계약업체들이 2017년 6월 1일 및 그 이후에 발표되거나 체결되는 모든 주 정부 계약, 합의 및 조달에서 자사의 모든 직원들의 성별, 인종, 민족, 직책 및 급여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 날 및 그 이후에 발표된 계약 및 조달에는 반드시 이러한 추가 요건을 명시한 조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하청업체들도 반드시 그들의 직원들에 대해서 동일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계약금액이 25,000 달러를 초과하는 원청계약에 대해서는 분기 단위로 주 정부기관 및 당국에 보고될 것이며, 100,000 달러를 초과하는 건설공사 원청계약에 대해서는 월 단위로 보고됩니다. 이 조치는 세금을 활용해서 임금 평등을 향한 투명성과 진전을 추진시킬 것입니다.

이 발표는 2015년에 서명된 주지사의 전면적인 여성평등법을 강화하는 것이며, 이 법은 고용주가 임금 정보를 공유하는 직원에 대해 보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성별, 인종 또는 민족을 이유로 자신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낮게 지급하는 고용주에 대한 손해배상 및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뉴욕에서 임금 평등 보호조치를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이 법률은 임신 때때 법률과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했으며, 모든 직장에서 임신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종식시켰습니다.

이민자에 대한 기회 확대

“We Are All Immigrants” 이니셔티브

“We Are All Immigrants” 이니셔티브에는 이민자들에 대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포괄적 제안 패키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엠펙이어 스테이트 이민자 법률지원 기금:** Cuomo 주지사는 모든 뉴욕 주민들이 그들의 시민권 유무를 불문하고, 법률 대리 및 적정 절차에 대한 기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국내 최초로 주 정부가 이끄는 민관 합동 법률지원 프로젝트를 개시할 것입니다. 이 사업은 주 전역의 옹호 활동 기관, 주요 칼리지 및 대학, 법률회사, 그리고 법률 협회와 협력해서, 뉴욕주 이주자 지원국이 관리할 것입니다.
- **뉴욕주 이주자 지원국을 통한 귀화 서비스 확대:** 시민 생활과 경제 생활에 대한 이민자들의 점증하는 참여에 중점을 둔 국내 최초의 주 정부 차원의 사무국인 ONA 는 추가로 1,500 명의 자격을 갖춘 이민자에 해당되는 뉴욕 주민들이 미국 시민이 되도록 돕고, 그들의 귀화 신청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또 하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작년 7 월에 발표된 국내 최초의 NaturalizeNY 민관 협력사업의 성공을 강화할 것입니다. NaturalizeNY 은 귀화 절차 전 과정을 통해 종합적 지원을 제공하며, 여기에는 무료 자격 심사, 신청 절차 지원, 귀화 시험 준비, 그리고 시민권 자격을 갖춘 저소득 이민자들을 위한 귀화 신청 수수료 바우처가 포함됩니다. 현재 거의 백만 명의 뉴욕 주민들이 미국 시민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12 월에 725 달러로 인상된 연방 처리 수수료를 부담할 여력이 안되서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464,000 명으로 추정되는 뉴욕 주민들이 그 소득 수준에 기초할 때, 연방 정부로부터 이 처리 수수료를 면제받을 자격이 있지만, 면제 자격을 구비하지 못한 158,000 명의 추가적인 뉴욕 주민들이 존재하며, 이들에게 있어서 수수료는 여전히 귀화에 대한 장애물입니다.
- **이민자에 관한 블루 리본 패널:** 이민자들과 그 가족들의 성공적인 사회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서, Cuomo 주지사는 이민자에 관한 뉴욕주 블루 리본 패널을 소집할 것입니다. 이 패널은 이민자들이 우리 주에서 성취한 부와 성공의 깊이를 반영하는 자신의 스토리를 갖고 있는 뉴욕 주민들로 구성될 것입니다. 이 패널은 이민자 가정의 사회 통합을 지원하는 주 정부 서비스의 현재 상황을 평가하고, 새로운 이주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원을 보다 잘 배분하는 방법에 대해 권고할 것입니다.
- **DREAM Act 통과 추진:** Cuomo 주지사는 수천 명의 뉴욕 주민들에 대해 고등 교육의 문호를 궁극적으로 개방하기 위한 DREAM Act 를 추진할 것입니다. DREAM Act 는 정식 서류를 갖추지 못한 학생들에게 등록금 지원 프로그램과 아울러, 주 정부에서 관리하는 장학금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이를 통해서 그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더욱 더 크게 기여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2002년 이래, 정식 서류를 갖추지 못한 학생들도 뉴욕의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우리 주에서 고등학교 졸업 동등학력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SUNY 및 CUNY에서 거주자 등록금(in-state tuition)을 적용받을 자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매년 재능 있는 많은 학생들이 단지 학비를 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등록금 지원 자격이 결여된다는 이유로 그들의 잠재력을 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의 이민자 성공 증진

취임 이래, 주지사는 주 정부기관 전반에 걸쳐 언어 장벽 해소를 보장하기 위해서 광범위한 행정 명령에 서명했고, 지역의 법 집행기관이 추방 가능 대상자를 확인하는 것을 돕도록 요구한 연방 프로그램에 우리 주가 참여하는 것을 정지시켰으며, 이민자들을 기만하는 기관들에 대해 책임을 묻는 법률에 서명했고, 이주자 지원국을 설립했습니다. 법무장관이었을 때, Cuomo 주지사는 이민 사기와 싸우기 위해서도 일했으며, 이민자들을 기만하는 회사들을 성공적으로 조사하고 기소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시민권 법률을 활용했습니다. 그는 또한 우리 주의 이민자 집단을 대신하여 2,300만 달러가 넘는 법원의 판결과 합의 해결도 확보했습니다.

뉴욕주는 440만 명이 넘는 이민자들의 본거지이며, 이는 뉴욕 주민 5명 중 1명에 해당됩니다. 이민자들은 기업 소유자, 근로자, 소비자 및 납세자로서 우리 주의 경제에 현저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 범죄와의 전쟁 및 관용 장려

주 차원의 중요범죄대책팀 설립

차별, 편견에 기한 협박, 괴롭힘 및 폭력에 대한 신고가 최근에 증가함에 따라, 주 정부 차원의 중요범죄대책팀 창설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대책팀은 주 경찰의 구성원들로 이루어질 것이며, 이들은 형법의 범위 내에서 주 전역에 걸쳐 중요 범죄의 방지, 수사 및 탐지 업무를 직접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인권국도 대책팀의 일원이 되어서, 개인들에게 차별행위에 대한 벌칙을 포함해서, 그들의 권리와 구제수단을 알릴 것입니다.

더 나아가, 대책팀은 각각의 카운티 내에서 편견과 관련된 동향, 차별적 실무 처리 및 지역사회 기반의 취약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카운티 지도자, 지방검사, 교육청 지도자, 지역 경찰서 및 기타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할 것입니다.

현재, 뉴욕주 법률에 따르면,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혈통, 성별, 종교, 종교적 관습, 연령, 장애 또는 성적 성향에 관한 인식이나 믿음 때문에 피해자를 대상으로 해서 명시된 일련의 범죄행위 중 하나를 범하거나, 그러한 행위가 해당 유형의 인식이나 믿음의 결과로서 범해지는 경우, 해당 범죄자는 중요 범죄를 범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중요 범죄는 개인, 개인들의 집단, 또는 공공 재산이나 민간 재산을 상대로 범해질 수 있습니다. 주 법률에 따르면, 인종, 출신 국가, 종교, 민족, 그리고 그 밖의 보호받는 많은 분류 사유에 기초해서 차별하는 행위 또한 불법입니다.

관용 및 이해 이니셔티브 개시

주지사는 시민권을 보호하고, 두려움과 폭력을 조장하는 증오 발언과 싸우기 위한 주 정부의 노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관용 및 이해 이니셔티브(Tolerance and Understanding Initiative)”를 개시했습니다.

이 이니셔티브에는 종교 지도자들로 구성되는 범종교 자문위원회가 포함되며, 이 위원회는 주 전역에 걸쳐 종교 기관들에서 주 정부 공무원 및 지역사회 지도자들과 함께 회의를 소집할 것입니다. 이 위원회는 Dolan 추기경이 선도할 것이며, 개인의 신념이나 그 밖의 정체성을 이유로 해서 개인을 상대로 범해지는 폭력이나 인권 위반행위 등 일반 공중의 불협화음 문제에 대해서 주 정부 공무원들에게 지침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 위원회는 모든 종교와 문화의 보다 큰 이해와 관용을 증진하고, 열린 마음과 포용성을 증진하며, 모든 뉴욕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주 정부의 노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2016년 11월에 Cuomo 주지사는 주 전역에 걸쳐 편견 및 차별에 기한 사건을 신고할 수 있는 무료 핫라인의 운영을 개시했습니다. 현재까지, 총 2,182 건의 전화가 핫라인에 접수되었으며, 차별 및 편견에 대한 불만사항과 주장에 대해 후속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소관 기관에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총 86 건의 전화가 수사과 아울러 잠재적인 증오 범죄를 조사하는 그 밖의 법 집행기관에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 주 경찰에 회부되었습니다.

같은 달에 주지사는 주 전역의 모든 학생들에 대해 뉴욕주의 인권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확대하는 법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현행법하에서는, 오로지 사립학교 학생들만 인권법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공립학교 학생들은 차별 대우를 받더라도 법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